『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대전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전문역량을 갖춘 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1)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사업_기초학습지원

응시 번호	구분	내 용					
01	모집분야 및 인원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사업_기초학습지원 / 팀원 1명					
	지원자격	* 자격기준 1. 공통필수 사항: 관련학과(사회복지학, 상담학, 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2. 공통필수사항 충족자 중 다음 기준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 이상 소지자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소지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소지자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소지자 ※ 이 외에 관련법 및 가족사업안내 지침 상 종사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담당업무	-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학습지원 업무 - 기타 센터 운영 업무 (입사 후 세부 업무 배정)					
	근로조건	근로형태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3개월 수습 기간 적용)				
		급여수준	2024년 가족사업안내 운영지침 기준에 의함 * 사업예산 고려 - 전임자 호봉 범위 내 (3호봉) 채용				
		근무장소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출장지				
		4대보험 및 퇴직금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연금(확정기여DC)가입				
		근무시간 주 5일(40시간) 기준. 단,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유연 근무, 시간외근무 가능					
		근무기간	최종 결과 발표 이후 (센터 상황으로 출근일 조정될 수 있음.)				
		근무기간	최종 결과 발표 이후 (센터 상황으로 출근일 조정될 수 있음.)				

2)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_ 언어발달지원

응시 번호	구분	내용				
02	모집분야 및 인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_언어발달지원 / 언어발달지도사 1명				
	지원자격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졸업예정자 포함)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담당업무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 부모상담 및 교육 - 기타 센터 운영 업무 (입사 후 세부 업무 배정)				
	근로조건	근로형태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3개월 수습 기간 적용)			
		급여수준	2024년 가족사업안내 운영지침 기준에 의함			
		근무장소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출장지			
		4대보험 및 퇴직금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연금(확정기여DC)가입			
		근무시간	주 5일(40시간) 기준. 단,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유연 근무, 시간외근무 가능			
		근무기간	최종 결과 발표 이후 (센터 상황으로 출근일 조정될 수 있음.)			

2. 제출서류

-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붙임 양식사용)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양식사용)
- 3) 채용결격사유 보완서약서 1부 (붙임 양식사용)
- 4) 학력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5) 자격증 및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증명서인 경우 뒷자리는 지워서 제출
- 6) 취업취약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해당자에 한함)
- * 이메일 접수 시 모든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취합하여 제출

3.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1) 원서접수기간 : 2024. 11. 19. (화) ~ 12. 3. (화) (~18:00) / 15일
- 2) 접수방법 : e-mail (da9946@kakao.com) 접수

이메일 제목 : 입사지원서(지원분야 <mark>응시번호</mark>)_홍길동

3) 문의전화 : 042-629-6180 (박주화)

4. 전형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① 1차 서류심사	* 서류심사일자 : 2024. 12. 4. (수)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2024. 12. 4. (수) 오후 예정- 홈페이지공지 및 개별연락 (면접 일시 및 장소 안내)			
② 2차 면접심사	* 면접일자 : 2024. 12. 5.(목) 오전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 공고 - 면접 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③ 3차 적격여부 확인	* 최종결과 발표 이후 (예정)	* 면접합격자에 한함- 채용 건강검진, 범죄경력조회 등			
④ 근무개시일	최종 합격자 한하여 개별 안내				

[※]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사항

- 1)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 후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결격사유(범죄 경력조회결과, 채용신체검사결과 등)가 발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면접위원 심사표의 평가점수 배점에서 "하"이하를 받을 경우 불합격 처리)
- 2)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 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3) 응시원서 등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사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채용 서류가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5) 자격증 등에 대해서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6) 최종 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거나, 최종 합격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근무 개시 후 1개월 미만 퇴사하는 경우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함
-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 1)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함
- 2) 학 력 : 졸업 외에 재학·휴학·수료·중퇴인 경우도 기재
- 3) 경력: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하되, 경력증명서 제출 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기재함(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 4) 자격증 : 해당 자격증 명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자격증 사본 미제출시 불인정)
 -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입 사 지 원 서

접수번호				지원분d) }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취업가능	법정 취업가능	 연령(만	· 19세) 이상	입니까? (해도	당되는 곳	에 🗸 하시	오.)		
연령	법정 취업가능연령(만 19세) 이상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 하시오.)								
주소 (우편번) (현거주)									
(선기)	시) 전화번호 전화 휴대전화]-			
연락처	전자우편 전자우편					<u>'</u>			
	L'II L								
	대학교 이하	전공	부전공				졸업/재학/수료		
직무관련 하고고 0	대학원(석사)	전공		부전-	<u>구</u>		졸업/재학/수료		
학교교육	대학원(박사)		부전공			졸업/재학/수료			
377-3-3	근무처	직위	담당 업무(직무내용)			근무	근무기간(연, 월)		
직무관련 총 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년 월 ~ 년 월			
(단 /미르/ 						년	월 ~ 년 월		
			자격사항	-	발행처		취득일		
자격증 및	관련 자격증					(1	년 월 취득)		
특기사항	한번 기(jo 					(1	년 월 취득)		
						(1	년 월 취득)		
	구분					ā	해당 여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기다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기타 취업지원	여성가장								
대상 여부	*여성 실업자 중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자								
	만 5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20일 동안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할 예정임' (최종 합격자의 서류는 기관에서 보관)

본인은 대전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공채에 응시하고자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인)

자기소개서

※ 특별한 양식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1매 이내)

- 자기소개, 지원사유, 다문화 또는 교육 경력 등을 작성

2024. . .

작 성 자 : OOO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대전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경력·자격사항, 장애·보훈 관련 사항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접수일로부터 1개월간 보유·이용·보관됩니다.
-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자필서명 및 날인 누락 시 미제출로 간주되어 불이익(감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결격사유 보완서약서

주 소: 휴대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生(만 세)

본인은 아래 각 호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음을 서약하며,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은 당연 해지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본인이 지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 합하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9.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10.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2.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 사람
-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3.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4.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0 년 월 일

위 본인 (인)

*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자필서명 및 날인 누락 시 미제출로 간주되어 불이익(감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귀하